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536801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8.

판결 선고2024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39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1.부터 2024. 9. 13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

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30,39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. 6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4. 9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,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진정화

별지